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Brief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0년 제7호(통권 제15호)

발행일 2020년 7월 22일 | 발행인 배규식 | 편집인 이규용 | 편집교정 정철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 TEL 044-287-6083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재호**

I. 서론

그간 대기업·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은 그 과실이 서민경제에 까지 미치지 못해 저성장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제활동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 서민경제의 근간¹⁾을 이루고 있지만 세계화, 대형화, 정보화하는 시장경쟁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재정 부실과 높은 폐업률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008~2017년 동안 가계소비지출은 231조 원(연평균 3.9%) 증가했지만, 세계화·대형화·정보화 관련 지출은 102조 원(연평균 8.4%) 증가했다. 이는 해외소비 증가, 대형마트·SSM 등에 대한 가계소비 증가와 온라인쇼핑 증가 등 외부적 요인이 자영업자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

영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서 자영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²⁾ 개인화, 소자본, 비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직접 지원 방식,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경영비용 부담 완화, 경영컨설팅 및 창업교육 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자영업자가 성장·혁신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기업’ 관점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자기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반영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개선을 위

* 이 글은 김재호 외(2019),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본문의 간결성을 위해 인용한 내용의 출처 표기는 최대한 생략하였음. 보다 자세한 설명과 관련 참고문헌은 김재호 외(2019)를 참고하기 바람.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이다. 자영업자 수('02, 621만 명→'18.10, 567만 명)와 비중('02, 27.9%→'18.10, 20.9%)은 감소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17.7) 및 보완대책('18.1),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

해 2018년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의 고용효과는 직접 고용창출 효과 이외에도 적정 영업이익 확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등 경영 여건을 유지함으로써 비자발적 폐업이나 도산 등을 방지하는 등의 질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영혁신을 위한 인프라 제공,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혁신성장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향후 건설한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기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통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선 방향 모색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II.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 및 지원사업 현황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러한 사람과 연계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로 구분)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개인사업체 혹은 법인사업체로 정의된다.³⁾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중복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일부는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한다.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약 370만 개 개인 및 법인사업체 중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2017년 매출액이 매출액 기준을 (근사하게) 만족하는 사업체는 약 324만 개(88%)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약 717만 명이며 자영업자 약 295만 명(41%), 무급가족종사자 약 71만 명(9.9%), 근로자 약 305만 명(43%), 기타종사자 약 46만 명(6.5%)으로 구성된다(표 3 참조).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28%, 91만 개)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약 21%, 68만 개)이 그다음으로 두 업종이 사업체에서 거의 50%의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 소분류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도로 화물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등의 순서이며 상위 10개 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53%, 20개 산업이 70%를 차지했다(표 4 참조).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약 717만 명 중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1/4(약 184만 명)은 도소매업, 1/5(약 156만 명)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며 제조업 종사자는 약 15%(약 107만 명)를 차지했다(표 5 참조). 산업소분류 기준으로 종사자가 가장 많은 두 산업은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이며 상위 10개 산업이 전체 종사자의 약 44%, 20개 산업이 약 62%를 차지했다. 사업체

〈표 2〉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분포

(단위: 개, %)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비중	누적 비중
1인	1,525,830	47.08	47.08
2인	795,287	24.54	71.62
3인	420,564	12.98	84.59
4인	261,417	8.07	92.66
5~9인	219,714	6.78	99.44
10인 이상	18,244	0.56	100.00
전체	3,241,056	100.00	

주: 종사자 수는 사업체의 자영업자,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수의 합계.
자료: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표 3〉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구성

(단위: 명, %)

종사자 종류	인원 수	비중
자영업자	2,947,171	41.1
무급가족종사자	707,682	9.9
상용근로자	2,121,464	29.6
임시일용근로자	933,433	13.0
기타 종사자	462,905	6.5
전체	7,172,655	100.0

자료: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표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구성 및 숫자

무등록사업자	개인사업자 (한 개인이 사업자 복수 등록 가능)	법인사업자
	소상공인(매출액 기준, 규모 기준 총칙) (2016년 314만 개 = 개인사업자 289만 개 + 법인사업자 25만 개) ^{a)}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2019년 645만 명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0만 명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88만 명 + 무급가족종사자 97만 명)^{b)}

자료: a)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12.20),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b) 2019년 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3) 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에 정한 업종별 기준(10억~120억 원 이하)에 맞는 기업.

〈표 4〉 소상공인 중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소분류 20개 산업

(단위: 개, %)

산업 소분류명	사업체 수	비중	누적 비중
음식점업	449,195	13.86	13.86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183,044	5.65	19.51
도로 화물 운송업	181,588	5.60	25.11
육상 여객 운송업	163,068	5.03	30.1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161,316	4.98	35.1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족제품 소매업	152,879	4.72	39.8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19,262	3.68	43.5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103,133	3.18	46.70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02,013	3.15	49.84
종합 소매업	99,764	3.08	52.92
기타 교육기관	77,856	2.40	55.33
가정용품 도매업	63,497	1.96	57.28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61,237	1.89	59.17
일반 교습 학원	59,942	1.85	61.02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59,335	1.83	62.8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3,656	1.66	64.51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629	1.50	66.01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8,331	1.49	67.50
숙박시설 운영업	45,678	1.41	68.91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4,990	1.39	70.30

주: 비중과 누적 비중은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수(3,241,056개)에 대하여 계산

자료: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표 5〉 소상공인 중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소분류 20개 산업

(단위: 명, %)

산업 소분류명	종사자 수(사업체당 평균)	비중	누적 비중
음식점업	1,088,562 (2.4)	15.18	15.18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365,932 (2.0)	5.10	20.28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족제품 소매업	261,879 (1.7)	3.65	23.93
도로 화물 운송업	244,891 (1.3)	3.41	27.3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31,197 (1.4)	3.22	30.57
종합 소매업	231,036 (2.3)	3.22	33.79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15,807 (1.8)	3.01	36.80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75,440 (1.7)	2.45	39.24
육상 여객 운송업	173,754 (1.1)	2.42	41.67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162,603 (1.6)	2.27	43.93
기타 교육기관	155,544 (2.0)	2.17	46.10
의원	153,965 (3.6)	2.15	48.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48,701 (3.3)	2.07	50.32
일반 교습 학원	139,933 (2.3)	1.95	52.27
가정용품 도매업	127,152 (2.0)	1.77	54.04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26,025 (2.1)	1.76	55.80
무점포 소매업	125,560 (5.9)	1.75	57.55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122,390 (3.1)	1.71	59.26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107,018 (1.7)	1.49	60.7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100,621 (2.1)	1.40	62.15

주: 비중과 누적 비중은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7,172,655명)에 대하여 계산

자료: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당 평균 종사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종 중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은 음식점업, 음료점업, 소매업이지만 평균 2명을 크게 넘지 않고 화물이나 여객 운송업, 미용업은 대부분 1인 자영업 형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의 45%는 1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며 90%는 5억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3개 업종인 음식점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55%,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76%,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족제품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70%는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 간에 강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체의 비중은 종사자 1인 사업체 중에서는 72%이나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4%에 불과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체의 비중은 종사자 1인 사업체 중에서는 2%에 불과하나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4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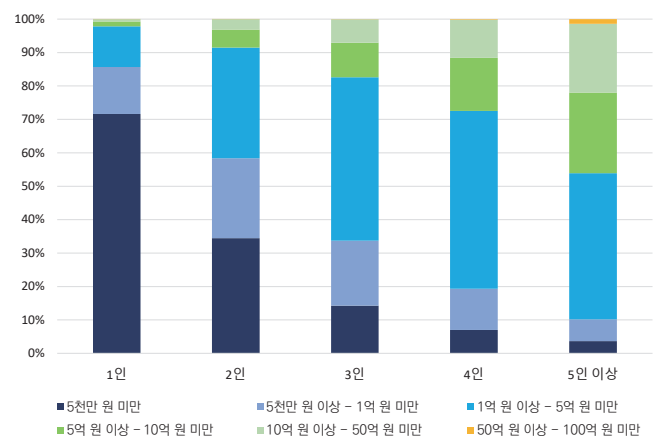
〈표 6〉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액 분포

(단위: 개, %)

매출액	사업체 수	비중	누적 비중
5천만 원 미만	1,453,843	44.86	44.86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534,501	16.49	61.35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897,971	27.71	89.05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206,617	6.37	95.43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143,764	4.44	99.87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4,360	0.13	100.00
전체	3,241,056	100.00	

자료: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그림 1〉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별 매출액 분포



III.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대책

현행 대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현황을 살펴 보면, 직접지원사업, 경영비용 부담 완화사업, 매출증대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직접지원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두루누리 사업 포함) 등이 포함된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는 수수료 부담 경감과 세금부담 경감, 자금 조달 지원으로 구분되고 수수료 부담 경감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등이

포함된다. 세금부담 경감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인상,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자금 조달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지역신보 보증공급 1조 원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매출 증대 지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등이 포함된다.

〈표 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정책		주요 내용	비고	
직접 지원 사업	소득 지원	(1) 근로장려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 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소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 2018년 1,300만 원 → 2019년 2,000만 원 - 홑벌이가구 : 2018년 2,100만 원 → 2019년 3,000만 원 - 맞벌이가구 : 2018년 2,500만 원 → 2019년 3,600만 원 재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재산합계 : 2018년 1.4억 원 미만 → 2019년 2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 2018년 85만 원 → 2019년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2018년 200만 원 → 2019년 300만 원 - 맞벌이가구 : 2018년 250만 원 → 2019년 300만 원 	강화
		(신청)		
	인건비 부담 경감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보수 2018년 190만 원 미만 → 2019년 210만 원 이하 - 평균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주 근로자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 2019년 5인 미만 사업체 15만 원 지원(신규) 	강화
		(신청)		
	사회 보험료 부담 경감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사업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어 사각지대를 해소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 근로자와 사업주 소득기준 : 2018년 190만 원 미만 → 2019년 210만 원 미만 지원금액 : 부담보험료의 최대 90%까지 	강화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건강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30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2018년 신규 가입자 50% → 2018년 가입자 30%, 신규 50%(5인 미만 60%) 경감 	강화
		(신청)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건강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30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2018년 신규 가입자 50% → 2018년 가입자 30%, 신규 50%(5인 미만 60%) 경감 	
		(신청)		
	경영 비용 부담 완화	수수료 부담 경감	(6)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대구간 2018년 연매출 5억 원 이하 → 2019년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5억 원~30억 원 구간 우대수수료를 신규 적용
(모두)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우대카드 수수료 적용		(7)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우대카드 수수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매출액 3억 원 미만 2.1% → 0.8%, 매출액 3억~5억 원은 2.1% → 1.3% 	신규
		(온라인 판매 모두)		

정책		주요 내용	비고
수수료 부담 경감	(8)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간편결제 도입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수수료율 : 연매출 8억 원 이하 0%, 8억~12억 원 0.3%, 12억 원 초과 0.5% 	신규
	(9)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음식점업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점업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가액에 100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0 음식점업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2018년 60% → 2019년 65%, 과세표준 1억~2억 원 2018년 55% → 2019년 6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18년 45% → 2019년 50% 	강화
세금 부담 경감	(10)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1,000만 원까지 납부세액 공제 대상 :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대상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 납부세액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6퍼센트를 곱한 금액 - 기타 : 결제금액에 1.3퍼센트를 곱한 금액 	강화
	(11)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세납부 의무 면제 부가세납부 의무 면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연매출 2,400만 원 → 2019년 3,000만 원 	강화
	(12)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소득 6,000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750만 원 내에서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 -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2% 공제 	신규
	(13)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연장
	(14) 초저금리 특별대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하여 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상 동일 인당 1억~2억 원의 한도에서 운전자금 대출, 보증비율 90% 	신규
	(15) 카드연계 특별대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 - 동일인당 1억 원 한도, 운전자금 대출, 보증비율 90%, 금리 1.0%p 감면 	신규
	(16)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단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카드매출대금 정산 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카드승인일의 익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 	신규
자금 조달 지원	(17) 지역신보 보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 - 동일기업당 8억 원 한도 	강화
	(18) 지역신보 특례보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보증요건 우대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8%, 최대 1억 원 	연장
	(19) 소상공인 긴급유자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기업당 7,000만 원, 금리 2.5% 	강화
	(20) 소상공인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과반수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주,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사업주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1억 원 	강화
매출 증대 지원	(21) 온누리상품권 발행 (취급처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발행 규모 : 2018년 1.5조 원 → 2019년 2.0조 원 -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비율 30% → 40% 	강화
	(22)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판매처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조정 - 현행 3~7% → 최대 9% 	신규

IV. 지원사업의 고용연계성 및 고용효과분석

이상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주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비용경감, 매출지원, 소득지원, 자금지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① 비용 경감은 인건비, 카드수수료, 세금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사업 등, ② 매출지원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사업 등, ③ 소득지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개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경감 사업, ④ 자금지원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특별대출, 신용보증 확대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원사업의 각 구분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지원사업별 고용효과를 추정했다.

비용경감 사업 중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조금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카드수수료, 세금 경감은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현재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 매출지원사업도 소상공인 사업을 유지 혹은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고용 유지 혹은 근로자의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지원사업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들이 현재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업 유지를 통해 근로자 고용 및 본인 고용 유지에 기여한다. 자금 지원은 사업의 유지 혹은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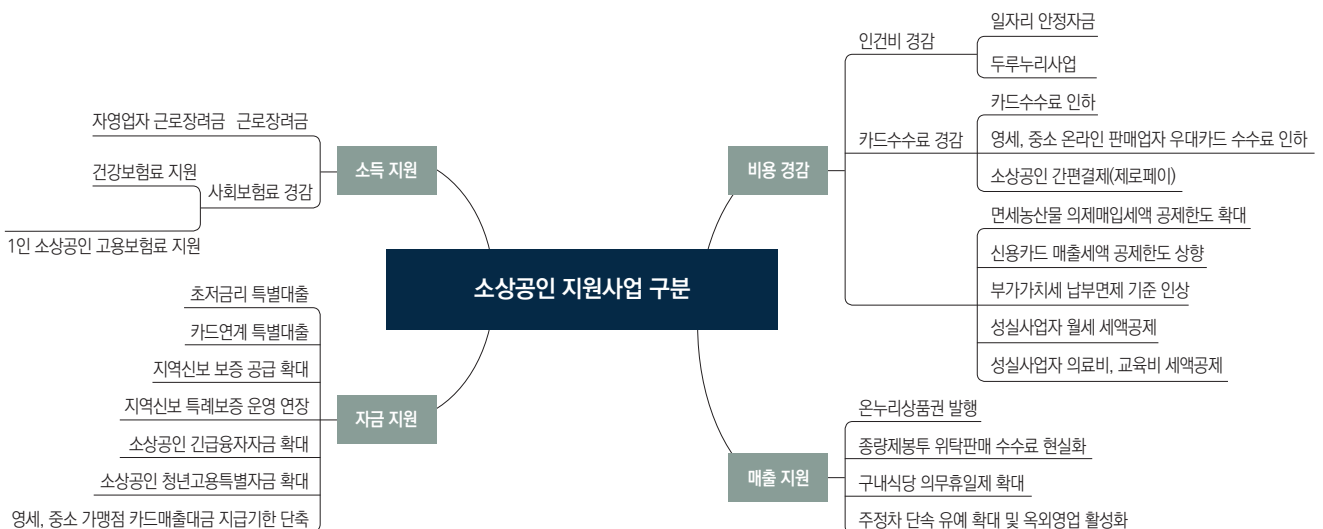
새로운 사업체가 진입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 유지, 확대를 통한 고용의 유지,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체의 진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사업 지원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매출 탄력성과 고용의 사업비용 탄력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 지원의 고용효과는 사업 지원 정책이 매출 증가 또는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정도와 매출 증가 또는 비용 절감의 고용효과를 곱하여 산출한다. 도소매업조사, 숙박·음식점업조사,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매출액이 영업이익에 주는 영향을 추정하고,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이 소상공인의 사업체 계속 운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한다(분석결과는 김재호 외(20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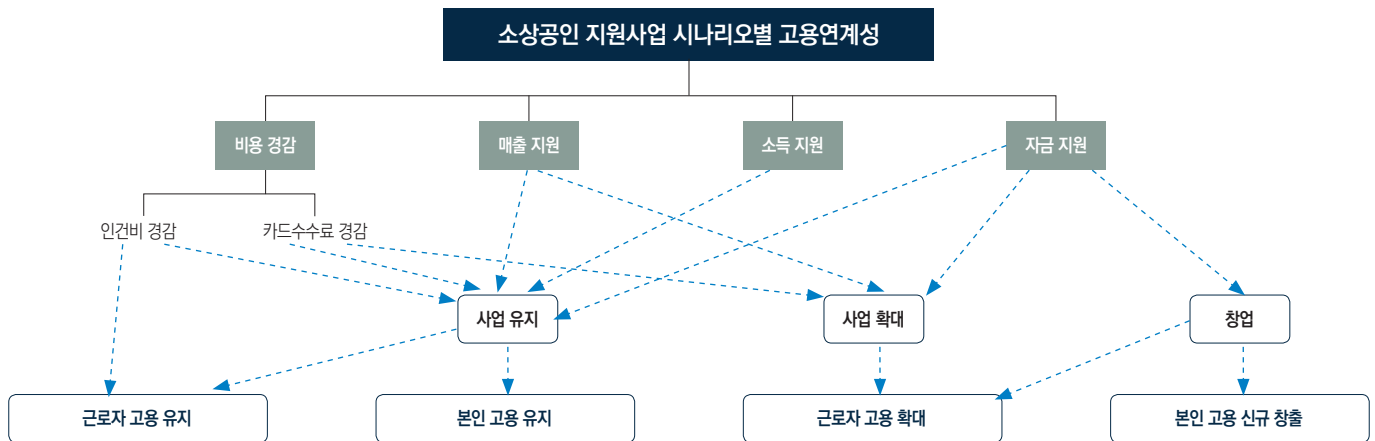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시나리오별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주요 업종 중 소매업에서 각종 정책 시나리오의 고용효과가 작게 나타나며 음식, 음료, 미용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소매업의 사업체 수는 타 업종보다 많지만 정책의 사업체당 효과는 매우 작아서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정책의 총 고용효과는 크지 않다. 음식점업은 사업체의 수도 많고 정책의 사업체당 효과가 작지 않아서 총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매출 증대 지원 시나리오의 효과는 서비스업중(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노동 투입에 대부분

[그림 2] 소상공인 지원사업 구분



[그림 3]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나리오별 고용연계성



의존하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책의 효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같은 비용으로 같은 크기의 매출 증대 혹은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 매출 증대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다.

[표 8] 정책 시나리오의 업종별 사업체당 효과 요약

(단위: 개, 명)

	소매업	음식점업	음료업	미용업	기타 업종
사업체 수 (2017년 기준)	625,240	449,195	183,044	161,316	1,822,261
1. 비용 경감	+	++	++	++	자료 없음
카드수수료 경감	30	700	230	140	자료 없음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1	210	8	3	자료 없음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해당 없음	16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 상향	31				
2. 매출 증대 지원	+	++	++	++	서비스업 +++
3. 자금 지원	+	++	++	++	자료 없음
초저금리 특별 대출	67				
카드연계 특별 대출	3				
4. 인건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은 5인 미만 사업체당 평균 0.08명 고용 증대 (한국노동연구원, 2018)				
두루누리 사업	고용 증대에 유의한 효과 없음 (유경준 외, 2016)				

- 주: 1) 본 연구의 추정 결과, 실태조사 결과,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한 것임.
 2) +는 전 업종에 비해 고용효과가 작음, ++는 전 업종의 고용효과와 유사함, +++는 전 업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3) 숫자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고용효과를 추산한 결과임.

V.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최근 최저임금인상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고용악화를 대비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보 특별출연 대출,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등 연말까지 2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서는 재개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고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정책 가운데 고용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은 정책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매출액이 증대될 경우, (같은 조건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보다 고용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지원에서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를 자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소비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된 정책프로그램을 인지하기 쉽도록 정책의 선택과 홍보가 필요하다. 지원대책에 포함된 정책 프로그램 중에서 세금부담 경감정책,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정책 등은 다른 정책에 비하여 소상공인들이 인지하기 쉽고, 따라서 정책 혜택을 받기도 쉽다. 향후에도 이처럼

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많고, 프로그램별로 활용방법 등에 대해 실제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시나리오별로 고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출 증대 비용 경감보다 더 큰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주요 업종별로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 사업을 유지·확대하거나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높은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비용경감 지원은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시장에 대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또는 바우처) 등 해당 지역의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은 유지·확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지역축제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고 유튜브, 홈페이지 광고 등 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홍보수단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해 매출 확대에 이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수도 너무 많아 이를 체

계화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이외에도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고용부, 해수부, 행안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실정으로 행정대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책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혜자’ 관점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자, 구직자나 구인기업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고용부가 주도하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 고용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공동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 사업은 비용 경감보다는 매출 증대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 재난지원금 지급은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8.2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 _____(2018.7.18),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 김재호·최강식·박철성(2019),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유경준·강창희·최바울(2016),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경제학연구』 64(1), pp.73~106.
- 이병희·오상봉·성재민·김현경(2018),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12.20),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 본 「KLI 고용영향평가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